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38
----------	-----

2015년 6월 23일  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년 6월 12일, 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15년 6월 17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
(2015년 6월 23일 상정, 수정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권기욱 도시안전기획관)

### 가. 제안이유

- 통합지주 설치 및 유지관리부서를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통합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조례 적용대상에 통합지주 신설(안 제2조)
- 정의규정에 통합지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(안 제3조)
- 통합지주 설치 및 관리조항 신설(안 제16조의2)

- 통합지주 설치를 강제화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부서를  
별표로 정함
- 통합지주 주관부서 및 유지관리부서 지정내용을 담은 별표 신  
설(별표 2 신설)

### 3. 검토보고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#### ■ 개요

- 본 안건은 가로변에 기능별로 난립하던 지주형 가로시설물을  
신호등 또는 가로등 중심으로 통합 정비함으로써 보행환경을  
개선하고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를 지  
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

#### ■ 지주형 가로시설물의 통합설치 규정 신설 관련(안 제16조의2)

-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지주형 가로시설물은 차량신호등, 안전  
표지, CCTV, 가로등, 사설안내표지 등 총 143,974개에 달  
하며,
- 서울지방경찰청을 비롯하여 서울시 교통운영과, 교통정보과,  
도로관리과, 보도환경개선과 등이 이들을 각기 설치·관리하고  
있어 다수의 독립지주들로 인한 시민 보행불편과 도시미관 저  
해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.([표 1] 참조).

[표 1] 지주형 가로시설물별 현황 및 소관기관

(단위: 개수)

총계	교통안전시설(지주 개수)				가로등 주	가로등 분전합	사설안내표지
	소계	신호등	안전표지	CCTV			
143,974	8,560	8,017	415	128	122,080(본)	6,840	6,494
소관기관	-	교통운영과	교통운영과	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과, 구청	도로관리과	도로관리과	보도환경개선과

- 이에 서울시는 교차로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16,057개의 독립지주를 7,999개의 통합지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조사결과(2014.11, 보도환경개선과-16325)를 내놓았고, 현재까지 이 중 672개의 통합지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됨.
- 따라서 [표 2]에서 알 수 있듯이 교차로지역 신호등을 중심으로 지주를 통합할 경우 8,058개의 독립지주가 사라지기 때문에 서울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안 제16조의2 통합지주의 설치 및 관리 규정 신설은 바람직하다 사료됨.

[표 2] 교차로지역 신호등 중심으로 지주통합화

('14년 5월 기준)

구분	현재 지주 수					통합 시 지주 수	비교 (감소)
	계	신호등주	가로등주	표지주	기타 (CCTV 등)		
계	16,057	8,017	7,497	415	128	7,999	△8,058

- 다만,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통합지주로의 정비가 신규설치나 내용연수가 다한 노후 독립지주들을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
[표 3] 통합지주로의 정비 비용추계

구분	계	2016	2017	2018	2019	2020	2020이후
정비대상 (개)	7,999	60	60	60	60	60	7,699
예산액 (억원)	1.598	12	12	12	12	12	1,538
※ 연도별 비용 상세내역 - 20,000천원*60개 = 1,200,000천원							
통합지주 신호등 1본 신설시 비용 -지주설치(12,260천원) + 철거비(3,000천원) + 제·경비(4,740천원) = <b>20,000천원</b>							

## ■ 통합지주 소관부서 지정 관련(안 별표 2)

- 안 [별표 2]는 통합지주를 다음 [표 3]과 같이 5가지로 분류 하면서 그에 따른 주관부서와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있음.

[표 3]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(개정안)

연번	통합대상	주관부서	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
1	차량신호등 + 가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2	차량신호등 + 보행신호등 + 가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3	차량신호등 + CCTV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, 교통정보센터
4	차량신호등 + 보행신호등 + 가로등 + CCTV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, 교통정보센터
5	보행신호등 + 가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
- 여기서,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를 살펴보면 ‘도로사업소’와 ‘구청’을 공통으로 지정하고 있는데, 이는 신호등은 도로사업소가 가로등은 구청이 주로 관리하고 있는 지금의 형태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됨.
- 그러나 만일 통합지주를 최초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누구를 설치주체로 해야 하는지 모호하고 또한, 설치이후 지주의 관리주체는 누구이고 사용 중 부가시설을 추가할 경우 설치는 누가 해야 하는지 명확치 않아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.
- 따라서 안 [별표 2]의 하단부에 별도 부연설명으로 ‘상기의 통합대상별 통합지주의 최초설치는 도로사업소가 하되, 최초설치 후 기타 부가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운영과와 협의하여 해당 부가시설 관리자가 설치하고, 유지관리의 경우 신호등과 지주는 도로사업소가 가로등은 구청이 CCTV는 교통정보과가 기타 부가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’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안 [별표 2] 중 ‘교통정보센터’는 현재 ‘교통정보과’로 명칭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반영하지 못한 착오로 수정이 필요함.

##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

질의) 교통안전시설 안전표지 및 사설안내표지는 통합지주에 포함되지 않는가? (유 청 위원)

답변) 필요 시 통합지주에 통합시킬 예정이며, 통합표지판으로 유

도할 계획임. (권기욱 도시안전기획관)

질의) 정비대상에 비해 정비계획이 미약하므로 실효성 있도록 과감한 시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? (조상호 위원)

답변)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음. (권기욱 도시안전기획관)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소위원회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**

**7. 수정안의 요지 :**

통합지주의 최초 신규 설치 및 설치 후 지주의 관리에 대한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안 [별표 2]에 부연설명을 추가함.

**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**

**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#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538
----------	--------

제안일자 : 2015년 6월 23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안 [별표 2]에서 통합지주의 최초 설치 및 설치 후 지주의 관리 주체와 사용 중 부가시설을 추가할 경우 설치주체가 모호하여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부연설명을 추가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안 [별표 2]의 하단부에 별도 부연설명으로 ‘상기의 통합대상 별 통합지주의 최초설치는 도로사업소가 하되, 최초설치 후 기타 부가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운영과와 협의하여 해당 부가시설 관리자가 설치하고, 유지관리의 경우 신호등과 지주는 도로사업소가 가로등은 구청이 CCTV는 교통정보과가 기타 부가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’는 문구를 추가(안 [별표 2]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「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[별표 2]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.



[별표 2]

연번	통합대상	주관부서	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
1	차량신호등 + 가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2	차량신호등 + 보행신호등 + 가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3	차량신호등 + CCTV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, 교통정보과
4	차량신호등 + 보행신호등 + 가로등 + CCTV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, 교통정보과
5	보행신호등 + 가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<p>※ 상기의 통합대상별 통합지주의 최초설치는 도로사업소가 하되, 최초설치 후 기타 부가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운영과와 협의하여 해당 부가시설 관리자가 설치하고, 유지관리의 경우 신호등과 지주는 도로사업소가 가로등은 구청이 CCTV는 교통정보과가 기타 부가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			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</p> <p>제2조(적용대상)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~ 6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-left: 40px;">《신설》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7. (생략)</p> 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~ 17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-left: 40px;">《신설》</p>	<p>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</p> <p>제2조(적용대상)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7. <u>통합지주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제3조(정의) (현행과 같 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~ 17. (현행과 같 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8. “<u>통합지주</u>”란 보도 <u>상에 설치하는 교통안 전표지, 도로안내표지, 가로등, 교통신호등, 사설안내표지 등의 각 종 지주시설물들이 동 일 또는 인접 지점에 위치하는 경우 하나의 지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	<p>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</p> <p>제2조(적용대상) (개정안 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~ 6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7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8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3조(정의) (개정안과 같 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~ 17. (개정안과 같 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8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4조(총괄관리자 지정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①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제1항의 총괄관리자 는 <u>별표</u>에 따라 시설물의</p>	<p>제4조(총괄관리자 지정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----- --<u>별표 1</u>-----</p>	<p>제4조(총괄관리자 지정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며,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(이하 "관리자"라 한다)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자는 따라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.</p>	
<p>제5조(관리사무의 위임) ① 시설물의 관리기관은 <u>별표와</u> 같으며,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유지·관리 사무를 <u>별표</u>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. ②, ③ (생략)</p>	<p>제5조(관리사무의 위임) ① ----- <u>별표 1과</u>----- ----- -----<u>별표 1</u>----- ----- ----- ----- ②,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5조(관리사무의 위임) ①~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《신설》</p>	<p>제16조의2(통합지주의 설치 및 관리) ① <u>도로관청은 가로시설물 설치 시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시설물을 통합 설치하여야 한다.</u> ② <u>통합지주 주관부서와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는 별표 2와 같다.</u></p>	<p>제16조의2(통합지주의 설치 및 관리) ① (개정안과 같음)  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-----	-------	-------

<p>제46조(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그 밖의 도로부속물은 <u>별표</u>의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에 준하여 관리자 및 자치구청장이 책임 관리한다.</p>	<p>제46조(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)----- ----- -----<u>별표 1</u>----- ----- -----</p>	<p>제46조(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) (개정안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《신 설》

[별표 2]

[별표 2]

연번	통합대상	주관부서	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
1	차량신호등 + 가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2	차량신호등 + 보행신호등 + 가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3	차량신호등 + CCTV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, <b>교통정보센터</b>
4	차량신호등 + 보행신호등 + 가로등 + CCTV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, <b>교통정보센터</b>
5	보행신호등 + 가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
연번	통합대상	주관부서	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
1	차량신호등 + 가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2	차량신호등 + 보행신호등 + 가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3	차량신호등 + CCTV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, <b>교통정보과</b>
4	차량신호등 + 보행신호등 + 가로등 + CCTV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, <b>교통정보과</b>
5	보행신호등 + 가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
※ 상기의 통합대상별 통합지주의 최초설치는 도로사업소가 하되, 최초설치 후 기타 부가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운영과와 협의하여 해당 부가시설 관리자가 설치하고, 유지관리의 경우는 신호등과 지주는 도로사업소가 가로등은 구청이 CCTV는 교통정보과가 기타 부가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7. 통합지주

제3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“통합지주”란 보도상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, 도로안내표지, 가로등, 교통신호등, 사설안내표지 등의 각종 지주시설물들이 동일 또는 인접 지점에 위치하는 경우 하나의 지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별표”를 “별표 1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별표와”를 “별표 1과”로, “별표”를 “별표 1”로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통합지주의 설치 및 관리) ① 도로관리청은 가로시설물 설치 시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시설물을 통합 설치하여야 한다.  
②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는 별표 2와 같다.

제46조 중 “별표”를 “별표 1”로 한다.

별표를 별표 1로 하고,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연번	통합대상	주관부서	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
1	차량신호등 + 가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2	차량신호등 + 보행신호등 + 가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3	차량신호등 + CCTV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, 교통정보과
4	차량신호등 + 보행신호등 + 가로등 + CCTV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, 교통정보과
5	보행신호등 + 가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<p>※ 상기의 통합대상별 통합지주의 최초설치는 도로사업소가 하되, 최초설치 후 기타 부가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운영과와 협의하여 해당 부가시설 관리자가 설치하고, 유지관리의 경우 신호등과 지주는 도로사업소가 가로등은 구청이 CCTV는 교통정보과가 기타 부가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			

##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</p> <p>제2조(적용대상)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~ 6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-right: 20px;">《신설》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7. (생략)</p> 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~ 17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-right: 20px;">《신설》</p> <p>제4조(총괄관리자 지정) ①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제1항의 총괄관리자는 <u>별표</u>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며,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(이하 "관리자"라 한다)에</p>	<p>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</p> <p>제2조(적용대상)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7. 통합지주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u></p> <p>제3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~ 17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18. "통합지주"란 보도상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, 도로안내표지, 가로등, 교통신호등, 사설 안내표지 등의 각종 지주시설물들이 동일 또는 인접 지점에 위치하는 경우 하나의 지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제4조(총괄관리자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-----<u>별표 1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

현 행	개 정 안
<p>계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자는 따라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.</p>
<p>제5조(관리사무의 위임) ① 시설물의 관리기관은 <u>별표와</u> 같으며,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유지·관리사무를 <u>별표</u>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5조(관리사무의 위임) ① ----- -----<u>별표 1과</u> ----- ----- - <u>별표 1</u>----- 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《신 설》</u></p>	<p>제16조의2(통합지주의 설치 및 관리) ① <u>도로관리청은 가로시설물 설치 시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시설물을 통합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통합지주 주관부서와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는 별표 2와 같다.</u></p>
<p>제46조(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그 밖의 도로부속물은 <u>별표</u>의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에 준하여 관리자 및 자치구청장이 책임 관리한다.</p>	<p>제46조(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)- ----- -----<u>별표 1</u>-----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《신 설》</p>	[별표 2]			
	연 번	통합대상	주관 부서	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
	1	차량신호등 + 가 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	2	차량신호등 + 보 행신호등 + 가로 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	3	차량신호등 + CCTV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 청, 교통정보과
	4	차량신호등 + 보행 신호등 + 가로등 + CCTV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 청, 교통정보과
	5	보행신호등 + 가 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<p>※ 상기의 통합대상별 통합지주의 최초설치는 도로사업소가 하되, 최초설치 후 기타 부가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운영과와 협의하여 해당 부가시설 관리자가 설치하고, 유지관리의 경우는 신호등과 지주는 도로사업소가 가로등은 구청이 CCTV는 교통정보과가 기타 부가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				